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명희



2020년 7월 10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35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 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7조(제1항)의 “과반수”를 “1/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영기획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영기획부장 이 현 동
	담당 성명 (전화번호)	이 태 권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시험위원의 임명) ① 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출제, 채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험위원은 과목당 2인 이상으로 하고, 면접시험과 서류전형 위원도 2인 이상 하되, 외부 전문위원(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외)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4. <생략> ② ~ ⑧ <생략></p>	<p>제7조(시험위원의 임명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 1/2 -----</p> <p>1. ~ 4. <생략> ② ~ ⑧ <생략></p>